

	보도자료	
	9.18(금) 조간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/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	
책임자	권대영 과장(2156-9710)	담당자	고영호 서기관(2156-9711)
	최성일 국장(3145-8300)		김영근 사무관(2156-9712)
배포일	2015. 9. 15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5매

제 목 : 그림자규제 근절(根絶), “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.”

－ 「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」 확정·발표 －

※ 제10차 금융개혁회의('15.9.10) 심의·의결

- 행정지도 3대 원칙 : ①공문시행, ②절차준수, ③제재금지
-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·외부통제 절차 신설
- 금리,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
- 음부즈만 제도,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

⇒ 12월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

□ 금융권내 자율·책임문화를 확산하고자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 ('15.9.10)를 거쳐 “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”을 마련

< 참고 : 행정지도, 감독행정, 그림자규제 개념 >

- ① (행정지도)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하여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작용
 - ② (감독행정)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령·규정에 대한 설명·통보, 주의환기, 이행촉구 등 행정지도 외(外) 영역
- ✓ 금융회사는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①행정지도뿐만 아니라 ②감독 행정 등을 건건이 간섭하는 규제로 인식·부담 ⇒ 소위 그림자규제

□ 행정지도 등에 대한 당국의 3대 원칙 ; ①제재금지, ②공문시행, ③내·외부 통제절차 준수

① “행정지도·감독행정 미준수 만을 이유로 제재는 불가”

- 검사 이후 컨설팅 성격의 경영유의·개선사항을 미이행한 것에 대해 제재해오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재근거* 삭제
- * 관련 규정 :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15조제2항

② 그간 체감규제로 작용했지만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해 엄격한 통제절차 신설

- 1) 반드시 공문으로 지도
- 2) 대외발송 공문 전결직위를 상향조정(팀장→국장)
- 3) 매년 1회 공문을 전수점검하여 결과를 금융위원회 회의에 상정
- 4)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

③ 9월중 금융회사 대상으로 행정지도 등의 효력·제재여부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취합하여 연내 일괄하여 회신

- * 금융회사 내규, 자율규제 등에 숨어있는 행정지도는 정비하고,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규화 추진
- 행정지도에 대한 제재불확실성으로 인해 폐지된 행정지도도 준수하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

④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용을 회피하던 행정지도 운영절차 합리화

- (현행) “금융위·금감원 사전협의→금융위 사전보고→금융위 사후 종합보고”의 3단계 절차를 준수
- (개선) “금융위 사전보고” 절차를 폐지*하고, 금융위 사후보고 시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

* 금융감독원은 “금융감독 행정지도 사전심사위원회”(위원장: 수석부원장)를 설치하여 행정지도 시행 전 자체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

참고 1 행정지도 절차 합리화 및 감독행정 통제절차 신설

⑤ 금리, 수수료 등 가격이나 배당, 인사 등 **고유 경영행위**에 대한 행정지도 금지 원칙을 「금융규제 운영규정*」에 반영(12월)

*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·감독 과정에서 준수할 내부규범인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(12월 제정)에 반영

⑥ 이번 개선방안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**음부즈만 등 외부기관**이 당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공개

- **음부즈만**은 금융당국 또는 협회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**개선을 권고**하고, **금융당국**은 **이행결과**를 보고

- **외부 전문가**가 **매년 1회 실태평가**를 실시

□ 이번 개선방안은 연내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으로 제도화하고, **10월부터 시행** → 향후 위반자는 **엄정 조치**

□ 또한 추진내용이 **금융당국에 정착**되고, **금융권 전역**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노력

○ **지속적 내부교육** 등 변화관리를 통해 인식, 행태 변화 유도

○ **준법감시인 간담회**(9월말 예정) 개최 및 **현장점검반** 현장 방문 시 개선내용 적극 설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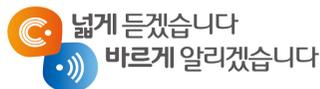
※ 자세한 내용은 별첨.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참고

구분	행정지도	감독행정						
		현행	개선					
개념	•금융회사등의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 요청 등	•관련 법령 설명·주의환기·이행촉구 등						
의견 청취	•행정지도 시행 20일 전 온라인 공지, 공청회 등 의견청취 의무 실시	•미실시(법령에 대한 감독당국의 재량행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므로 생략)						
금융위·금감원 사전협의	•행정지도 시 금융위·금감원 협의	없음	•금감원은 시행 전 금융위에 통지 시행공문 발송시 금융위에도 발송					
내부보고	사 전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전</th> <th>개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금융위 사전보고</td> <td>폐지¹⁾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전	개선	금융위 사전보고	폐지 ¹⁾	•금감원 자체통제절차에 따라 시행 - 내부 결재 국장급 이상
			종전	개선				
금융위 사전보고	폐지 ¹⁾							
사 후	<table border="1"> <tbody> <tr> <td>매년 1분기 행정지도 관리현황 금융위 사후보고</td> <td>시정명령권 추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매년 1분기 행정지도 관리현황 금융위 사후보고	시정명령권 추가	•매년 내부 행정지도 사전심사위 검토 •내부통제, 내부감사 시 중점 점검 •매년 1분기 행정지도 관리 현황 금융위 사후 보고 및 필요 시 시정명령				
	매년 1분기 행정지도 관리현황 금융위 사후보고	시정명령권 추가						
시행	•문서로 실시 - 행정지도 취지·내용, 존속기간 - 등록 일련번호 - 행정지도를 하는 자 신분	•행정지도와 동일						
등록·공개	•전산등록·대외 공개 •비공개 사유 -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- 금융회사 영업비밀 - 금융시장 교란, 불공정거래 행위 유발 등	•행정지도와 동일						
위반시 제재	•제재 불가	•단순히 당해 감독행정 지도 위반만으로는 제재불가						

1) 금감원 행정지도는 금감원 금융감독 행정지도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의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
① 투자권유절차 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통보

(감독당국의 과도한 재량행사 사례)

-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적용 관련하여, 기존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 이내라도 투자자 성향을 투자권유할 때마다 평가 하도록 투자자성향 평가 구조 설계 요청

<관련 법령 : 자본시장법 제46조>

제46조(적합성 원칙 등)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관련 유의사항 통보

(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행사 사례)

- 위기상황 분석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RBC하락 가능성을 감안, 위기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

<관련 법령 : 보험업감독규정 제3-3조 별표5>

제3-3조(내부통제에 관한 세부기준)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별표5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별표 5

3.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인식·측정·감시·통제하는 체제를 구축·운영하는데 있어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